

##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1호
의결년월일	2004. 1. 16 (제110회)

제안년월일 : 2004년 1월 8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003. 7. 18) 및 동법시행령(2003. 12. 18)개정으로 지방의원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조정하고자 함.

### □ 주요골자

가.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구분 및 인상

현행		변경		
계	의정활동비	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550,000원	550,000원	1,100,000원	900,000원	200,000원

나. 의원의 국외여비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 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기타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의정활동비는 매월 550,000원”을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으로 한다

별표 2중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숙 박 비 (1야당)
의장·부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 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정활동비) ①(생략)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550,000원으로 하고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200,000원 -----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미불화)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미불화)	
구분	숙박비 (1야당)	구분	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	가등급 151 나등급 109 다등급 84 라등급 72	의장·부의장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의원	가등급 132 나등급 86 다등급 64 라등급 56	의원	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